

2016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세입예산안

- 재무국 소관 2016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14조 8,326억 5천 1백만원 대비 0.1% 감소한 14조 8,240억 4천 4백만원 임.

<2016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도		2016년도 (C)	2015년대비	
	당초(A)	최종(B)		증 감 (C-B)	증감률 ((C-A)/A)
계	14,247,775	14,832,651	14,824,044	-8,607	-0.1
지방세수입	13,622,530	13,787,530	14,125,773	338,243	2.5
보통세	12,048,781	12,198,781	12,500,921	302,140	2.5
목적세	1,391,260	1,406,260	1,399,604	-6,656	-0.5
지난년도수입	182,489	182,489	225,248	42,759	23.4
세외수입	625,245	625,245	698,271	73,026	11.7
경상적세외수입	28,357	28,357	38,417	10,060	35.5
임시적세외수입	596,888	596,888	659,854	62,966	10.5
보전수입등내부거래	0	419,876	0	-419,876	-
순세계잉여금	0	419,876	0	-419,876	-

시 세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C)	2015년대비	
	당초(A)	최종(B)		증 감 (C-B)	증감률 ((C-B/B)
합 계	13,622,530	13,787,530	14,125,773	338,243	2.5
보 통 세	12,048,781	12,198,781	12,500,921	302,140	2.5
취 득 세	3,320,920	3,470,920	3,302,152	-168,768	-4.9
주 민 세	404,019	404,019	420,847	16,828	4.2
재 산 세	1,914,911	1,914,911	2,027,874	112,963	5.9
자 동 차 세	1,036,357	1,036,357	1,039,334	2,977	0.3
레 저 세	147,366	147,366	129,457	-17,909	-12.2
담 배 소 비 세	484,436	484,436	499,676	15,240	3.1
지 방 소 비 세	993,159	993,159	950,428	-42,731	-4.3
지 방 소 득 세	3,747,613	3,747,613	4,131,153	383,540	10.2
목 적 세	1,391,260	1,406,260	1,399,604	-6,656	-0.5
지역자원시설세	233,714	233,714	252,023	18,309	7.8
지 방 교 육 세	1,157,546	1,172,546	1,147,581	-24,965	-2.1
지난년도수입	182,489	182,489	225,248	42,759	23.4

세외수입 등

(단위 : 백만원, %)

예 산 과 목	2015년		2016년 (C)	2015대비	
	당초(A)	최종(B)		증 감 (C-B)	증감률 ((C-B/B)
총 계	625,245	1,045,121	698,271	-346,850	-33.2
세 외 수 입 (계)	625,245	625,245	698,271	73,026	11.7
경 상 적	28,357	28,357	38,417	10,060	35.5
공유재산임대료	6,220	6,220	14,721	8,501	136.7
기 타 사 용 료	1,103	1,103	1,049	-54	-4.9
증 지 수 입	588	588	591	3	0.5
공공예금이자수입	19,678	19,678	18,227	-1,451	-7.4
기 타 이 자 수 입	768	768	3,829	3,061	398.6
임 시 적	596,888	596,888	659,854	62,966	10.5
국유재산매각수입	0	0	0	0	-
시유재산매각수입	548,867	548,867	610,478	61,611	11.2
변상금및위약금	1,288	1,288	1,275	-13	-
기 타 수 입	41,966	41,966	43,769	1,803	4.3
체납처분수입	1	1	1	0	0.0
시도비반환수입	22	22	43	21	95.5
그 외 수 입	41,943	41,943	43,725	1,782	4.2
시금고출연금	40,000	40,000	40,000	0	0.0
법안카드캐시백착금	512	512	462	-50	-9.8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액	1,192	1,192	1,224	32	2.7
주행분자동차세등 관련이자등	239	239	2,039	1,800	-
지난년도 수입	4,767	4,767	4,332	-435	-9.1
지난년도 기타	0	0	0	0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419,876	0	-419,876	-
순세계잉여금	0	419,876	0	-419,876	-

- 각 사항별로 전년도 최종예산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 지방세는 3,382억 4천 3백만원(전년대비 2.5%)이 증가하였고,
 - 지방세 중 보통세는 3,021억 4천만원(전년대비 2.5%) 증가,
 - 목적세는 66억 5천 6백만원(전년대비 0.5%) 감소,
 - 지난년도수입은 427억 5천 9백만원(전년대비 23.4%) 증가하였음.
 - 세외수입은 730억 2천 6백만원(전년대비 11.7%)이 증가하였으며,
 - 경상적세외수입은 100억 6천만원(전년대비 35.5%) 증가,
 - 임시적세외수입은 629억 6천 6백만원(전년대비 10.5%) 증가하였음.

- 세입예산과목별 주요증가 내역은
 - 보통세 중 주민세(168억원), 재산세(1,130억원), 자동차세(30억원), 담배소비세(152억원), 지방소득세(3,835억원)
 - 목적세 중 지역자원시설세(183억원)와
 - 지난년도 수입(428억원) 증가 등임
 -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85억원), 기타이자수입(31억원), 시유재산 매각수입(616억원), 기타수입(18억원) 증가 등임.

- 세입예산과목별 주요감소 내역은
 - 보통세 중 취득세(1,688억원), 레저세(179억원), 지방소비세(427억원)
 - 목적세 중 지방교육세(250억원)가 감소하였으며,
 -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이자수입(15억원), 지난년도 수입(4억원) 감소 등임.

■ 시민 1인당 담세액은 1,341천원으로 금년보다 1.2% 증가하였음.

※ 시세 세입(14조 1,258억원)중 지난년도시세(2,252억원)를 제외하고 2014년말 기준 현재 서울시 인구수(10,370천명)로 나눈 것임.

2. 세출예산안

■ 재무국 소관 2016년 세출예산은 2조 474억 1천 9백만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2조 3,238억 3천 5백만원 대비 11.9% 감액된 수준이며, 2015년도 최종예산 2조 3,306억 6천만원 대비 12.2%가 감액된 수준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2016년도	2015년 대비 증 감	증감율	
	당초	최종				
총 계	2,323,835	2,330,660	2,047,419	-283,240	-12.2%	
행정관리	소 계	1,067,231	1,067,196	729,195	-338,001	-31.7%
	행정운영경비	985,038	985,034	650,205	-334,830	-34.0%
	사업비	82,193	82,161	78,990	-3,171	-3.9%
교 부 금	1,256,604	1,263,464	1,318,225	54,761	4.3%	

■ 전략목표별 예산배분은

-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무회계 운영 0.1%인 19억 4천 4백만원,
- 시유재산의 공공성과 수익성 강화 4.1%인 577억 6천 7백만원임.
- 계약심사제도의 내실화로 예산절감도모에 0.01%인 1억 8천만원,
-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정세정 구현에 72.9%인 1조 186억 3천 9백만원,
- 세입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에 22.2%인 3,105억 1천 5백만원,
- 체납시세 징수 목표달성 및 고액체납 관리 강화에 0.6%인 82억 4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2016년도 세부사업별 2015년도 당초 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2015예산		2016예산	당초 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합계	2,323,835	2,330,660	2,047,419	-276,416	-11.9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885	885	1,477	592	66.9
2015회계연도결산업무추진	198	198	236	38	19.2
지방재정관리시스템운영	30	30	30	1	0.0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17	17	21	3	23.5
전자계약나라장터이용 수수료납부	60	60	60		0.0
계약정보관리 및 공공구매 업무추진	108	108	120	12	11.1
행정수요대비 공유재산확보	59,103	59,103	54,879	-4,224	-7.1
시유재산 관리위임	500	500	500	-	0.0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1,714	1,714	2,290	577	33.6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59	59	98	39	66.1
계약심사 업무추진	46	46	76	30	65.2
설계경제성 심사제 활성화 및 운영	63	63	32	-32	-49.2
원가관리시스템 운영	95	95	-	-95	-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10	10	10	-	0.0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118	118	110	-8	-6.8

세부사업별	2015예산		2016예산	당초 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재정보전금	968,016	968,016	1,016,883	48,867	5.0
한국지방세연구원법정출연금	1,508	1,508	1,636	128	8.5
시세 징수교부금	288,588	295,447	301,342	12,754	4.4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334	334	317	-17	-5.1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874	874	831	-44	-4.9
상시 세금납부 체계구축	103	103	133	30	29.1
시세세입안정적확보지원	190	190	190	-	0.0
모범납세자 지원	303	303	422	118	39.3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30	30	30	-	0.0
시세 세원발굴 지원	219	219	219	-	0.0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5,000	5,000	5,000	-	0.0
세외수입 아이디어 발굴 경진대회	13	13	-	-13	-
세무종합시스템운영및유지보수	1,459	1,459	1,272	-188	-12.8
세무조사인터넷신고시스템운영	47	47	42	-5	-10.6
세외수입종합정보시스템유지보수	587	587	718	131	22.3
세외수입종합정보시스템 인프라 개선	47	47	-	-47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DB암호화	407	407	-	-407	-
시세입및체납징수 활동강화	2,521	2,521	2,514	-8	-0.3
자동차세체납차량 번호판영치업무지원	5,232	5,232	5,449	217	4.1
체납징수기법공유 시-구합동워크숍	13	13	13	-	0.0
고액체납시세 징수강화	265	265	265	-	0.0
기본경비	2,405	2,405	1,774	-628	-26.1
인력운영비	982,629	982,629	648,30	-334,936	-34.1

Ⅱ .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은 2015년도 최종예산대비 3.9%, 1조 415억원(당초 예산 25조 5,184억원 대비 7.6%, 1조 9,347억원)이 증가한 27조 4,531억원으로 편상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은 세수가 감소하고, 복지확대 및 자치구 교부금 등 의무지출은 늘어나 전년도 보다 다소 어려운 재정운용 여건이 될 것으로 보여짐.

1. 2016년도 경기전망

- 정부는 우리 경제의 내수 중심에서 회복세가 이어져 내년도에도 3%대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3.5%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으나,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은행은 이보다 낮은 3.1%와 3.2%로 전망하고 있음.
 - IMF와 OECD도 각각 3.2%와 3.6%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으나, LG경제연구원은 정부의 3%대 성장률과 달리 2.7%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음.¹⁾
 - 대외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 신흥국의 경기 부진과 대내적으로 가계부채 확대 및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 경기전망과 관련한 변수들이 올해에 비해 내년도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1) LG경제연구원이외에도 대우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현대증권 등은 2%대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음.

<2016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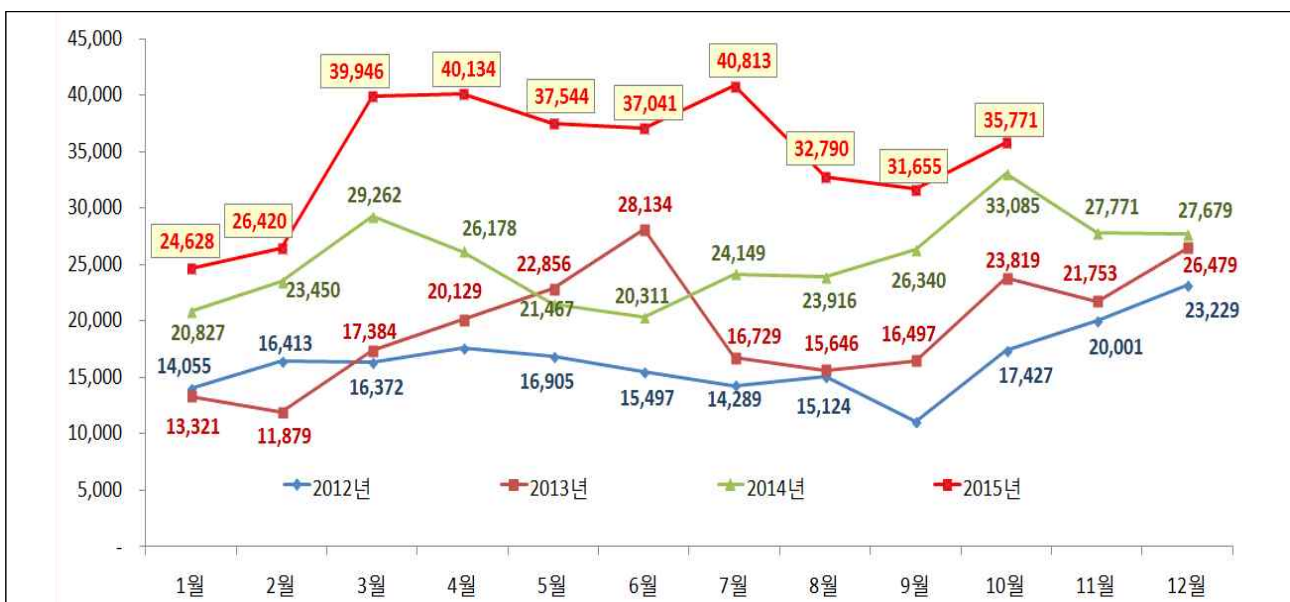
구분 연도	정부 (기획재정부)	KDI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	LG 경제연구원	IMF	OECD
2015년	3.1	3.0	2.7	2.6	2.7	3.0
2016년	3.5	3.1	3.2	2.7	3.2	3.6

※ 경기전망 수치는 2015. 11. 5까지 발표된 자료임.

- 아울러, 지방세수입과 관련되는 주택시장 동향을 보면, 저금리 기조의 유지 및 전세가격 상승에 의한 실수요자 매매 전환 수요 유지 등으로 금년도에 부동산 거래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내년도에는 미국 금리인상 예정,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요인을 미쳤던 DTI (총부채 상황비율)·LTV(담보인정 비율) 규제완화의 종료 등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 현황]

(단위 : 건)



최근5년 부동산 거래 동향

(단위 :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0년	월계	16,681	17,980	21,357	18,225	15,004	13,667	13,024	12,609	11,535	14,220	18,355	24,560
	누계	16,681	34,661	56,018	74,243	89,247	102,914	115,938	128,547	140,082	154,302	172,657	197,217
'11년	월계	19,454	17,624	23,735	19,783	18,271	19,150	16,179	17,433	16,493	18,224	17,723	22,481
	누계	19,454	37,078	60,813	80,596	98,867	118,017	134,196	151,629	168,122	186,346	204,069	226,550
'12년	월계	14,055	16,413	16,372	17,606	16,905	15,497	14,289	15,124	11,120	17,427	20,001	23,229
	누계	14,055	30,468	46,840	64,446	81,351	96,848	111,137	126,261	137,381	154,808	174,809	198,038
'13년	월계	13,321	11,879	17,384	20,129	22,856	28,134	16,729	15,646	16,497	23,819	21,753	26,479
	누계	13,321	25,200	42,584	62,713	85,569	113,703	130,432	146,078	162,575	186,394	208,147	234,626
'14년	월계	20,827	23,450	29,262	26,178	21,467	20,311	24,149	23,916	26,340	33,085	27,771	27,679
	누계	20,827	44,277	73,539	99,717	121,184	141,495	165,644	189,560	215,900	248,985	276,756	304,435
'15년	월계	24,628	26,420	39,946	40,134	37,544	37,041	40,813	32,790	31,655	35,771		
	누계	24,628	51,048	90,994	131,128	168,672	205,713	246,526	279,316	310,971	346,742		

2. 세입예산 검토

2016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14조 8,326억 5천 1백만원) 대비 0.1% 감소된 14조 8,240억 4천 4백만원으로, 주요 증가세입은 기준시가 및 공시지가 등 과표상승에 의해 1,130억원이 증가한 ‘재산세’, 내년도 완만한 경기성장률을 고려하여 3,835억원이 증가한 ‘지방소득세’, 서울의료원 매각수입 반영 등에 따라 616억원이 증가한 ‘시유재산매각수입’ 등이며, 주요 감소 세입은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취득세’ △1,688억원, 성동구와 송파구 장외발매소 폐업에 따른 ‘레저세’ △179억원, 경제성장의 전망보다 소폭 증가에 따른 ‘지방소비세’ △427억원 등임.

보 통 세

전년대비 2.5% 증가된 12조 5,009억 2천 1백만원의 보통세 세입을 계상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세입의 65.2%(전년도 66.0%)를 차지하고 있음.

■ 취득세

- 부동산 및 차량의 취득과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관련 등기·등록시 부과되는 세입으로 시세 총 세입액의 26.4%(전년도 24.4%)를 차지하고 있음.
 - 취득세는 부동산분 2조 7,438억 3천 3백만원, 차량분 5,583억 1천 9백만원 등 총 3조 3,021억 5천 2백만원(전년 대비 18.7% 감소²⁾)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 “부동산분”의 경우 2015년 11월 신고예정인 한전부지 특수요인을

2) 전년도 대비 증감은 전년도 전망예산액(4조 597억 8천만원)과 비교한 증감 표시임.

제외한 '15년 부과전망액 기준으로 주택·건물·토지 등 과세유형별 점유비와 거래신장률, 과세대상별 과표신장률을 적용하여 추계하였고,

- “차량분”의 경우 2015년 부과전망액 기준으로 2011년~2012년 리스차량 특수요인을 제외한 2013년 이후 3년평균 자동차등록 대수신장률(100.73%)과 징수율(99.46%)을 반영하여 추계하고 있음.

- 2016년도 취득세의 추계는 특수요인이었던 한전부지 매각 취득에 의한 세입을 제외하고, 부동산경기침체를 반영한 거래신장률(주택 84.54%, 건물 93.23%, 토지 92.72%)을 적용한 것 인바, 이는 내년도 부동산 거래 감소를 감안한 보수적인 세입 추계라고 할 것임.

■ 취득세 추계 반영지표

<부동산>

● 과세대상별 점유비(직전년도 점유비 반영)

- 주택 48.94%, 건물 19.63%, 토지 31.43%

※ 2014.1.1.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취득세 영구인하 반영

● 거래신장률(부동산경기 침체 반영)

- 주택 84.54%, 건물 93.23%, 토지 92.72%

※ 주택·건물·토지 유형별 부동산 경기침체 반영

● 과표 신장률 : 주택(98.87%), 건물(102.14%), 토지(101.15%)

- (주택) 주택가격 보합세를 감안 최근 3년평균 서울시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증감률

- [건물] m^2 당 기준과표 인상률(부동산 경기침체가 반영된 최근 5년 평균 $1m^2$ 건물기준시가 증감률 반영)

- [토지]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어 최근 5년 평균 서울시 지가변동률

<차량>

- 자동차등록대수증감률(100.73%) : 2011~2012년 리스차량 특수요인 발생(자동차등록대수 감소)연도는 제외하고, 2013년 이후 3년평균 자동차등록대수 신장률을 반영하여 추계

■ '16년 취득세 추계 산출식

< 부동산 >

- [('15년 부과전망액 - 특수요인) × 과세대상별 점유비 × 거래신장률 × 과표신장률] × 징수율(최근 3년평균) = '16년 추계액

< 차 량 >

- [('15년 부과전망액) × 자동차등록대수 신장률 × 징수율(최근 3년 평균) = '16년 추계액

■ 한전부지 특수요인

< '한전부지' 최종낙찰 매각에 따른 특수요인 >

- 물 건 지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 토지면적 : 79,342 m^2
- 낙찰가격 : 10조 5,500억원
- 낙 찰 일 : 2014년 9월 18일
- 계약조건 : 계약체결일(9.26)로부터 1년 이내 4개월단위 3회 분납
- 취득세 납부 예정일 : 2015년 하반기

[취득세 납부 예상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방법 1	방법 2	방법 3
취 득 세	422,000	368,540	260,480
과 표	10조 5,500억원	9조 2,135억원	6조 5,210억원
공공기여 방법	현 금	토 지	토 지
비 고	100% 현금으로 공공기여를 했을 경우	감정가 기준 38.19% 토지로 공공기여 할 경우	낙찰가 기준 38.19% 토지로 공공기여 할 경우

▶ 취득세 세입추계(A+B) : 3,302,152백만원

산 출 내 역

○ 부동산 추계액(A) : 2,743,833백만원

- '15년 부과전망 : 3,541,632백만원

※ 2015년 발생 특수요인 부과액 : 422,000백만원

· 주택 : 특수요인 제외 '15년 부과액 × 주택점유비 × 거래신장률 ×
과표신장률 = 2016년 부과 추계액

$$\begin{aligned} &< 3,119,632\text{백만원} \times 48.94\% \times 84.54\% \times 98.87\% \\ &= 1,276,128\text{백만원} \end{aligned}$$

· 건물 : 특수요인 제외 '15년 부과액 × 건물점유비 × 거래신장률 ×
과표신장률 = 2016년 부과 추계액

$$\begin{aligned} &< 3,119,632\text{백만원} \times 19.63\% \times 93.23\% \times 102.14\% \\ &= 583,143\text{백만원} \end{aligned}$$

· 토지 : 특수요인 제외 '15년 부과액 × 토지점유비 × 토지거래신장
률 × 과표신장률 = 2016년 부과 추계액

$$\begin{aligned} &< 3,119,632\text{백만원} \times 31.43\% \times 92.72\% \times 101.15\% \\ &= 919,575\text{백만원} \end{aligned}$$

‘16년 추계액 : 2,743,833백만원

'16년 부과전망액 × 최고·최저제외 3년평균 징수율 = '16년 추계액
(2,778,846백만원 × 98.74%) = 2,743,833백만원

○ 차량 추계액(B) : 558,319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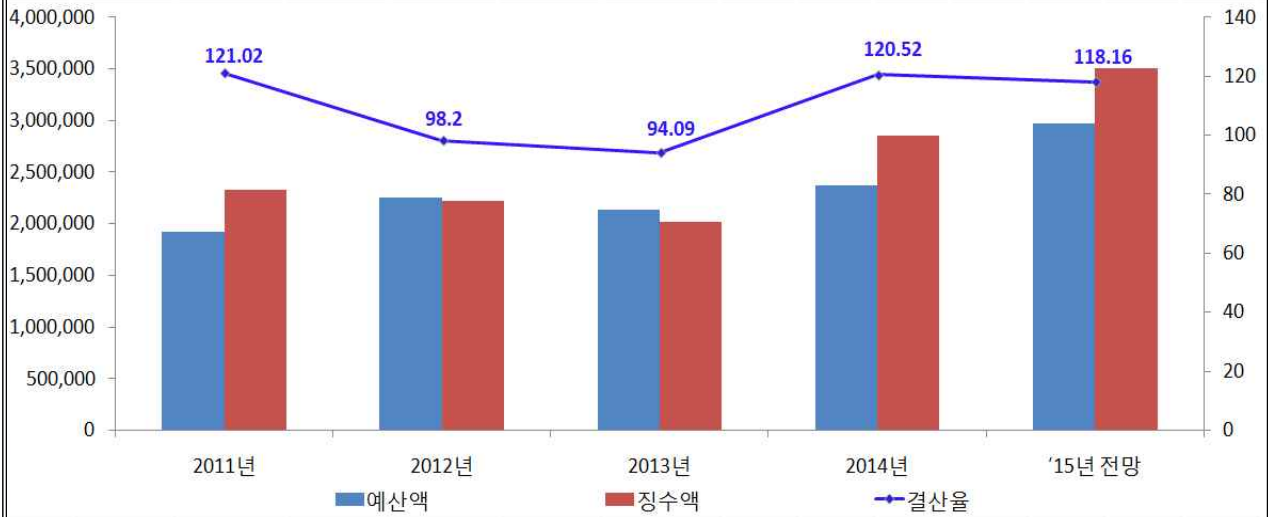
'15년 부과전망 × 차량등록대수신장률 × 최근 3년평균 징수율
= '16년 추계액

$$\begin{aligned} &557,282\text{백만원} \times 100.73\% \times 99.46\% \\ &= 558,319\text{백만원} \end{aligned}$$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부동산)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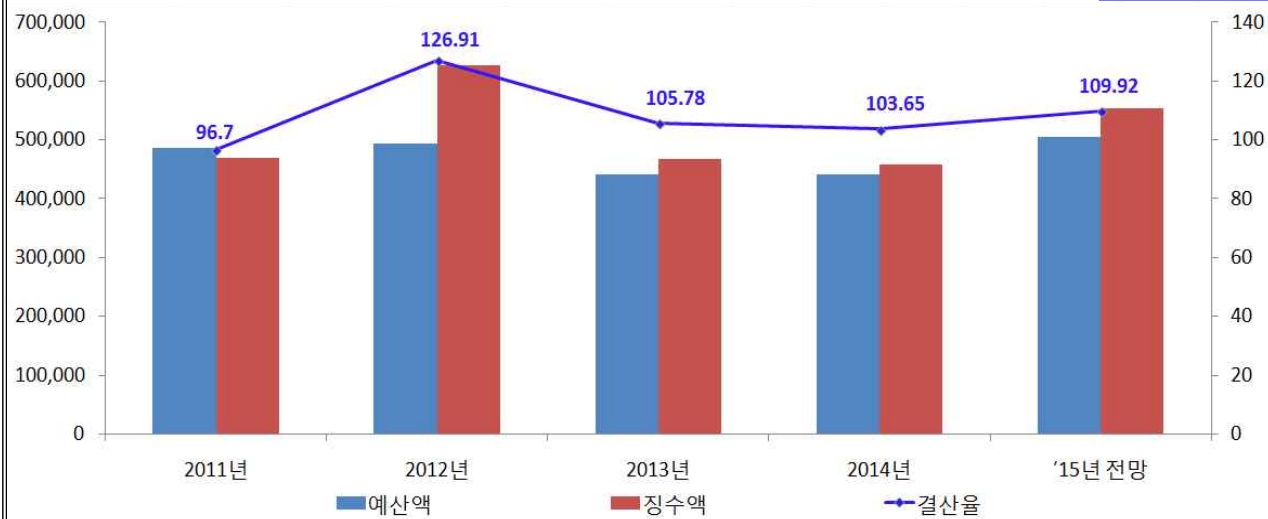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5년 전망	'16년 추계
예 산	1,920,210	2,257,606	2,139,875	2,367,329	2,966,662	2,743,833
결 산	2,323,894	2,216,910	2,013,467	2,853,151	3,505,507	-
결산율	121.02	98.20	94.09	120.52	118.16	-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차량)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5년 전망	'16년 추계
예 산	486,209	493,183	442,077	441,875	504,258	558,319
결 산	470,161	625,913	467,627	458,022	554,273	-
결산율	96.70	126.91	105.78	103.65	109.92	-



■ 주민세

- 주민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시세 총 세입액의 3.0%를 차지하는 4,208억 4천 7백만원(전년도 예산대비 4.2% 증가)으로 추계하고 있음.
 - “균등분”은 매년 일정한 추세로 증가하고 있는 세목으로 개인 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를 구분하고 과세대상별 '15년 부과전망액을 기준으로 세대수·사업자수 신장률과 징수율을 반영하여 477억원으로 추계하고,
 - “재산분”의 경우는 사업장 연면적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목임을 감안하여 사업자수 증감률을 적용하여 220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 “종업원분”의 경우 종업원과 급여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목임을 감안하여 취업자 수와 임금상승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2016년도 예상경제성장률(103.1%)을 반영하여 3,512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 2016년도 주민세는 종합적으로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 주민세 모두 사업자 수 증가, 임금상승 등을 반영하여 추계한 것으로 세수 규모는 매년 소폭 증가 추세라 할 수 있으나, 종업원분 추계시 내년도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수치인 3.5%보다 낮은 수치를 적용함에 따라 다소 보수적으로 추계 및 편성한 것으로 판단됨.

▶ **주민세 세입추계(A + B + C) : 420,847백만원**

구 분	추계액	산 출 내 역
균등분(A)	47,658	
- 개 인 (세대주)	(15,257)	◦ 2015년 부과전망 × 주민등록세대수 신장률 × 징수율 = (19,093백만원) × (100.15%) × (79.79%) = 15,257백만원
- 개인사업자	(18,197)	◦ 2015년 부과전망 × 개인사업자수 신장률 × 징수율 (19,940백만원) × (103.48%) × (88.19%) = 18,197백만원
- 법인사업자	(14,204)	◦ 2015년 부과전망 × 법인사업자수 신장률 × 징수율 = 추계액 (15,701백만원) × (108.93%) × (83.05%) = 14,204백만원
재산분(B)	21,962	◦ 2015년 부과전망 × 사업자수 증감률 × 징수율 = 추계액 (21,914백만원) × (103.48%) × (96.85%) = 21,962백만원
종업원분(C)	351,227	◦ 2015년 부과전망 × 2016년 예상경제성장률 × 징수율 = 추계액 (341,042백만원) × (103.10%) × (99.89%) = 351,227백만원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5년 전망	'16년 추계
예 산	330,089	364,278	398,500	396,029	404,019	420,847
결 산	332,358	364,014	377,789	389,360	407,860	-
결산율	100.7	99.9	94.8	98.3	101.0	-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소득세분, 법인세분, 특별징수분)는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와 연동되어 부과되는 세입으로, 시세 총 세입액의 29.3%인 4조 1,311억 5천 3백만원(전년도 예산대비 10.2% 증가)으로 추계하고 있음.
- 지방소득세는 시세 세입 중 가장 비중이 큰 세목으로, 소득세분의 경우 내년도 부동산 거래감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경기성장에 따른 개인 사업자 소득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에는 9,465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법인세분의 경우는 전년도 법인소득에 대해 다음연도에 확정 신고하는 세목으로 '15년 경제성장 등을 감안할 때 금년도 전망액(1조 3,335억원) 보다는 소폭 증가한 1조 4,157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 특별징수분의 경우, 당해연도 소득 및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는 세목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임금상승, 취업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법인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타 시·도 환급액 발생으로 '15년 전망액보다 감소한 1조 7,689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 지방소득세의 경우, 2015년도 지방소득세 전망액(4조 1,482억원)은 당초예산(3조 7,476억원) 보다 2,687억원이 늘어난 금액이 징수될 것인바, 내년의 완만한 경기성장률을 고려한다면 지방소득세는 보수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임.

▶ 지방소득세 세입추계(A + B + C + D) : 4조1,311억 5천 3백만원

구분	추계액	산출내역
A:종합소득세분	(584,046)	'16년 국세예산안 × 지방세 비율 × 우리시점유비 = '16년 추계액 12조 9,271억원 × 10% × 45.18% = 584,046백만원
B:양도소득세분	(362,515)	'16년 국세예산안 × 지방세 비율 × 우리시점유비 = '16년 추계액 9조 4,356억원 × 10% × 38.42% = 362,515백만원
C:법인세분	(1,415,698)	('16년 국세예산안 × 지방세 비율 × 우리시점유비) + 세액공제 · 감면 증수분 = '16년 추계액 (45조 9,958억원 × 10% × 24.68%) + 280,522백만원 = 1,415,698백만원 1135176
D:특별징수	(1,768,894)	'16년 국세예산안 × 지방세 비율 × 우리시점유비 = '16년 추계액 38조 5,632억원 × 10% × 45.87% = 1,768,894백만원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5년 전망	'16년 추계
예산	3,156,860	3,578,977	3,333,597	3,482,178	3,747,613	4,131,153
결산	3,197,213	3,517,305	3,404,824	3,310,020	4,016,267	-
결산율	101.28	98.28	102.14	95.06	107.17	-

■ 지방소비세

-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신설된 세목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정부의 2015년도 부가가치세 예산편성액에 지방소비세 비율(11%) 및 서울시 안분비율(행정자치부 배부기준 기준 5%분 14.2890%, 취득세인허관련 6%분 20.4145%)을 적용하여 산정한 바, 2016년도 지방소비세는 9,504억 2천 8백만원(전년도 당초예산 9,931억 5천 9백만원 대비 4.3% 감소)으로 추계하고 있음.
- 지방소비세는 본세인 부가가치세가 민간소비와 밀접하게 관련된 세목인 바, 경기변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것임. 이에 경제성장 영향력을 감안하여 내년도 세입전망은 금년도 결산전망액(9,066억원) 보다 소폭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겠음.
- 지방소비세의 재원이 되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016년도 세입 전망치를 보면, 정부(기획재정부)는 58조 1천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국회(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전망보다 6천억원을 상회하는 58조 7천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음.³⁾
- 서울시는 정부의 부가가치세 전망치를 기준으로 지방소비세가 전년 대비 4.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유가하락 등으로 인한 교역조건 개선 및 2015년 3분기 이후 소비심리의 개선 등으로 부가가치세수가 정부 전망치 보다도 상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의 2016년도 지방소비세 세입은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추계된 것이라 사료됨.

3) 2016년도 기획재정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국회기획재정위원회), 2016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따라서 지방소비세의 세입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세수증대 효과를 정확하게 반영·추계하려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국회예산정책처의 부가가치세 전망치(58조 7천억원) 반영시 지방소비세 추계액은 9,599억 5백만원으로, 집행부 추계액(9,504억 2천 8백만원) 보다 94억 7천 7백만원 증가가 전망됨.

기존 지방소비세 : 5%

- '10.1.1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세목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5%를 적용하여 계산
 - 특별징수의무자(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
- 납입관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 서울특별시장
 - 납입관리자는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대통령이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납입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각 도지사에게 납입
- 우리시 지방소비세 안분비율 : 14.2890%
 - ※ 민간최종소비지출 : 657,275,899백만원(가중치 적용시 1,120,770,983백만원)
- 안분방법 : 전국 지방소비세(5%) × 우리시 안분비율 = 우리시 지방소비세 세입

취득세 인하 관련 감소분 보전 : 6%

- '13.12.26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 인하 감면 보전분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6%를 적용하여 계산
 - 특별징수의무자와 납입관리자의 업무처리 내용은 위의 기존 5%의 지방소비세율과 동일
- 우리시 지방소비세 안분비율 : 20.4145%
 - ※ 안분기준 : 우리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소분 합계액 / 전국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 합계액
- 안분방법 : [전국 지방소비세(6%) - {지방교부세비율(19.24%) + 지방교육청교부금 비율(20.27%)}] × 우리시 안분비율 = 우리시 지방소비세 세입

■ '16년 추계액(A + B) : 950,428백만원

산 출 내 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 기존 5% 추계액 = 전국 지방소비세 비율(5%) × 우리시 점유비 = 2016년 지방소비세(기존 5%분) 추계액 3조 2,652억원 × 14.289% = 466,564백만원 ○ B : 취득세 감면보전분 6% 추계액 = 취득세 감면관련 지방소비세 인상율(6%) - [지방교부세 비율(19.24%) + 교육청교부금(20.27%)] × 우리시 전국대비 점유비율 = 2016년 취득세 감면보전분 추계액 3조 9,183억원 - (7,539억원 + 7,942억원) × 20.4145% = 483,864백만원

● 최근5년 예산 및 결산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5년 전망	'16년 추계
예 산	422,486	469,260	480,918	975,594	993,159	950,428
결 산	464,867	469,755	482,908	977,587	906,605	-
결산율	110.03	100.11	100.41	100.20	91.28	-

■ 자동차세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자동차 소유주(소유분 자동차세)와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주행분 자동차세)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1조 393억 3천 4백만원(전년도 예산대비 0.3% 증가)으로 추계하고 있음.
- 차량등록대수 증감률과 연도별 세입이 매년 비슷한 추이를 유지하고 있어, '14년 부과 전망액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대수 신장률과 징수율을 반영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자동차세 감면 금액은 '13년 이후 감소추세이나, 그 금액이 크지 않고 미미함에 따라 내년도 추계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음.
- 자동차세 보전분의 경우는 전국 자동차세 보전액(9,830억원)을 기준으로 우리시 2015년 상반기 안분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고 있음.
- 유가(운수업체) 보전분의 경우는 최근 유가보조금 안분비율이 매년 큰 폭으로 조정되고 있어 이 사항의 추계 반영에 어려움이 있는 바, 내년도 영업용 차량 증가 등을 감안하여 2016년도 추계는 택시·화물·버스 유가보조금 세출예산을 반영하여 추계하고 있음.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연도별 자동차세 감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5 전망
감면액	6,489	6,889	7,267	9,818	9,516	8,892	7,600	6,591	5,646

▶ 자동차세 추계(A+B) : 1조 393억 3천 4백만원

● 소유분 자동차세(A) : 5,454억 8천 8백만원

산 출 내 역	
○	'15년도 부과전망 × 자동차등록대수신장률 × 징수율 = '16년 추계액 632,265백만원 × 100.73% × 85.65% = 545,488백만원

[최근5년 예산 및 결산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5년 전망	'16년 추계
예 산	608,286	591,854	585,987	584,803	543,827	545,488
결 산	588,517	566,721	564,255	574,413	544,885	-
결산율	96.75	95.75	96.29	98.22	100.19	-

● 주행분 자동차세(B) : 4,938억 4천 6백만원

산 출 내 역	
○	자동차세 보전분 = 169,510백만원 - 전국자동차세보전분 × 우리시안분비율 = '16년 추계액 (983,000백만원 × 17.2442% = 169,510백만원)
○	유가(운수업체) 보조금 지원분 = 324,336백만원 - '16년 유가보조금 세출예산(택시·화물+버스) = '16년 추계액 (314,936백만원 + 9,400백만원 = 324,336백만원)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주행분 자동차세)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5년 전망	'16년 추계
예 산	500,600	505,161	484,671	477,269	492,530	493,846
결 산	419,744	490,127	527,938	489,114	501,609	-
결산율	83.85	97.02	108.93	102.48	101.84	-

[유가(운수업체) 보조금 안분율 변동 현황]

연도별	'05.2월	'06.2월	'07.2월	'08.2월	'08.12월	'09.2월	'10.2월	'11.2월	'12.2월	'13.2월	'14.2월	'15.2월
비율(%)	15.71	16.16	16.21	14.03	13.71	10.02	7.21	10.97	13.34	14.97	10.59	12.70
변동률	-21.1	2.9	0.3	-13.4	-2.3	-26.9	-28.0	52.1	21.6	12.2	-29.3	19.9

[연도별 주행분 자동차세 세율변경 현황]

구 분	'00.1.1	'01.7.1	'02.7.1	'03.7.1	'04.3.1	'05.7.8	'06.7.1	'07.7.23	'08.3.10	'08.10.7	'09.5.2 ~
적용 세율(%)	3.2	11.5	12.0	14.95	21.50	24.00	26.50	32.50	27.00	30.00	26.00

[자동차세 보전분 안분율 변동현황]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비율 (%)	21.85	22.17	22.17	20.07	20.07	18.72	18.72	18.17	18.17	17.58	17.58	17.24	17.24	-

■ 레저세

-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등의 투표권발매금 총액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으로, 1,294억 5천 7백만원(전년도 예산대비 12.2% 감소)으로 추계하고 있음.
- 사행성 산업 위축 및 우리시 안분비율 상승(경륜), 레저활동 인구 증가 등으로 세입 증가 추세인 세목이었으나, 성동구와 송파구 장외발매소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세입은 감소세로 전환되었음.
- 금년도의 경우 메르스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이용기피 등으로 세입 감소가 전망되나, 내년도에는 서울변동, 장외발매소 폐업 등 특수요인이 없음에 따라 '15년 부과 전망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별로 구분한 다음 최근 5년 최고·최저제외 3년평균 유형별 세액신장률을 적용 추계하고 있음.

● 레저세 (A + B + C) : 1,294억 5천 7백만원

산 출 내 역

- 경마(A) : ('15년도 부과전망 × 세액신장률) × 징수율
(77,727백만원 × 103.38%) × 100.0% = 80,354백만원
- 경륜(B) : ('15년도 부과전망 × 세액신장률) × 징수율
(37,793백만원 × 102.22%) × 100.0% = 38,632백만원
- 경정(C) : ('15년도 부과전망 × 세액신장률) × 징수율
(11,166백만원 × 93.78%) × 100.0% = 10,471백만원

[최근5년 예산 및 결산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5년 전망	'16년 추계
예 산	132,405	173,498	177,356	174,795	147,366	129,457
결 산	161,238	158,804	155,207	149,691	126,686	-
결산율	121.78	91.53	87.51	85.64	85.97	-

■ 담배소비세

-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4,996억 7천 6백만원(전년도 예산대비 3.1% 증가)으로 추계하고 있음.
-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불안요소로 인해 '09년 흡연율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10년 이후 경기회복 및 웰빙문화 확산과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로 성인 흡연율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세입은 감소추세임.
- 서울시가 이러한 흡연율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담배소비세를 편성하였으나, 최근 흡연율 하락이 정체되고 있는 바, 2016년 세입은 다소 보수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연도별 흡연율 변화추이

- 27.3%('05) → 22.90%('06) → 23.00%('07.12) → 21.90%('08.6) → 22.30%('08.12) → 22.10%('09.6) → 23.30%('09.12) → 22.40%('10.06) → 20.70%('10.12) → 20.20%('11.06)

※ 참조 : 보건복지부 흡연율 발표자료(2012년이후 미발표)

※ 보건복지부 흡연율 조사가 국민건강역량조사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2011년 하반기이후부터 국내 흡연율을 발표하지 않고 있음

▶ 담배소비세 추계 : 4,996억 7천6백만원

산 출 내 역

○ ('15년도 부과전망액 × 최근3년평균 담배판매량 증감률) × 징수율
 = '16년 추계액
 (504,163백만원 × 99.11%) × 100.0%}
 = 499,676백만원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전망	2016 추계
예 산	553,101	564,402	542,257	546,333	484,436	499,676
결 산	557,799	543,096	556,417	542,314	504,163	-
결산율	100.85	96.23	102.61	99.26	104.07	-

■ 재산세

- 재산세는 자치구 자원불균형 해소를 위해 구제인 재산세의 일정비율을 공동세로 징수하여 자치구에 균등배분하기 위해 2007년 7월 신설된 특별시분 재산세와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로, 총 2조 278억 7천 4백만원(전년 예산 대비 5.9% 증가)으로 추계하고 있음.
 - “특별시분 재산세”는 2015년도 25개 자치구 재산세 추계액(선박 및 항공기 제외)을 합산하여 2016년 특별시분 재산세 세입 비율(50%)을 적용하여 2조 279억원(전년 예산 대비 5.9% 증가)을 계상하고 있으며,
 -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과표상승으로 소폭 증가될 것으로 보고, 과세대상별 과표증감률 등을 감안하여 1조 931억 7천 4백만원(전년 예산 대비 5.2% 증가)을 계상하고 있음.
- 세입예산의 추계는 그 형식의 중요성 보다는 실질적인 세입규모 추산의 정확성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인바,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를 위한 집행부의 다각적인 연구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재산세 추계(A+B) : 2조 278억 7천 4백만원

● 특별시분재산세(A) : 9,347억원

산 출 내 역
○ '16년 자치구 재산세 추계액 × '16년 특별시분재산세 세입비율 = '16년 추계액 1,869,400백만원 × 50.00% = 934,700백만원

〔최근5년 예산 및 결산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5년 전망	'16년 추계
예 산	800,100	830,375	853,200	835,475	875,250	934,700
결 산	830,258	858,657	842,454	879,455	916,426	-
결 산 율	103.77	103.41	98.74	105.26	104.70	-

● 도시지역분 재산세(B) : 1조 931억 7천 4백만원

산 출 내 역

- 주 택(A) : 공동주택(B) + 개별주택(C) = 2016년 추계액
 500,966백만원 + 77,956백만원 = 578,698백만원
 - ▶ 공동주택(B) : ('15년도 부과전망 × 공동주택 점유비 × 공시가격 증감률
 주택수증감률 × 주택가격 변동률) × 징수율
 (577,485백만원 × 86.59% × 98.84% × 102.79% × 100.57%)
 × 98.05% = 500,966백만원
 - ▶ 개별주택(C) : ('15년도 부과전망 × 개별주택점유비 × 공시가격 증감률
 주택수증감률 × 주택가격 변동률) × 징수율
 (577,485백만원 × 13.41% × 103.29% × 98.55% × 100.57%)
 × 98.05% = 77,732백만원
- 토 지(D) : ('15년도 부과전망 × 공시지가증감률) × 징수율
 (414,181백만원 × 103.56%) × 96.51%
 = 413,956백만원
- 건 물(E) : ('15년도 부과전망 × 기준가액 증감률) × 징수율
 (100,422백만원 × 102.14%) × 98.00% = 100,520백만원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전망	2016 추계
예 산	907,793	938,610	989,913	978,710	1,039,661	1,093,174
결 산	928,021	971,205	976890	1,029,739	1,063,912	-
결산율	102.23	103.47	98.68	105.21	102.33	-

목 적 세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는 바, 전년대비 0.5% 감액된 1조 3,996억 6천만원의 세입을 계상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7.3%(전년도 7.6%)를 차지하고 있음.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자나 자원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로 특정자원분과 특정부동산분으로 구분되며, 총 2,520억 2천 3백만원(전년 예산 대비 7.8%)으로 추계하고 있음.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는 등록분취득세(20%), 재산세(20%), 담배소비세(43.99%), 레저세(40%), 균등분주민세(25%), 승용자동차세(30%), 등록분면허세(20%) 등의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목적세(전액 교육청으로 전출)로, 1조 1,475억 8천 1백만원(전년 예산대비 2.1% 감소)으로 추계하였음.

지난연도 시세

- 해당연도 출납정리기간 내에 납입되지 못한 세입을 다음연도 이후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에 편입하는 것으로, 2016년도 지난년도 시세의 경우는 2,252억 4천 8백만원(전년 대비 23.4%인 427억 5천 9백만원 증액)으로 편성하는 등 체납징수노력 등에 의거 매년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다만, 집행부의 2016년도 지난년도시세 예산편성이 체계적인 기법에 의한 추계가 아닌 목표달성이나 이에 따른 체납징수포상금을 염두에 둔 과소한 목표설정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향후 지난년도 각 세목에 대한 요소별, 사안별 특수사항을 반영한 추계기법의 개발 및 체납의 규모 측면만을 감안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2009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지난년도 시세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38세금징수과와 자치구의 체납징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징수율 변화추이 >

◦ 19.59%('06) → 18.83%('07) → 19.72%('08) → 22.18%('09) → 20.08%('10) → 18.24%('11) → 16.58%('12) → 15.70%('13) → 13.80%('14)

■ **지난년도 시세 추계 : 2,252억 4천 8백만원**

산 출 서 식

◦ ('16년 세목별 총체납 예상액 × 직전년도 세목별 징수율)
+ 특수요인 = '16년 추계액

● **2016년 지난년도 시세 세목별 추계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목	2015년말 총체납예상액 (A)	2015년 신규발생 체납액(B)	2016년 현황				추계액 (C+D)
			총체납 예상액 (A+B)	직전년도 징수율	2016년 징수전망 (C)	출납폐쇄 기간 특수요인 (D)	
계	865,768	446,508	1,312,276	12.98	170,279	54,969	225,248
취득세	55,907	32,336	88,243	15.09	13,316	2,098	15,414
주민세	250,947	8,431	259,378	5.06	13,124	1,086	14,210
지방소득세	403,655	261,408	665,063	5.96	39,638	3,171	42,809
자동차세	61,745	57,789	119,534	41.10	49,128	31,395	80,523
재산세 (특별시분)	52,872	16,026	68,898	25.53	17,589	3,904	21,493
재산세 (도시지역분)	6,728	28,530	35,258	25.53	9,001	4,584	13,585
지원자원 (특정부동산)	6,152	5,386	11,538	28.41	3,278	607	3,885
지방교육세	27,762	36,602	64,364	39.16	25,205	8,124	33,329

■ **최근5년 예산 및 결산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15년 전망	'16년 추계
예산	173,051	186,482	176,213	178,481	182,489	225,248
결산	157,882	165,811	187,983	177,187	179,714	-
결산률	91.23	88.92	106.68	99.27	98.48	-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기타수입(사·도반환금수입, 시금고출연금) 등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3.64%(전년도 3.4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도 최종예산 6,252억 4천 5백만원 대비 11.7% 증가된 6,982억 7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시유재산매각수입(서울의료원이적지 매각수입 5,349억원 반영)의 증가 등에 따른 것임.

■ 공유재산임대료

- 공유재산임대료는 최근 3년간 평균 일반징수 임대료 수입에 2015년도 지가상승률을 반영하여 147억 2천1백만원(2015년도 예산액 대비 136.7% 증액)을 계상하고 있음.
-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 것은 2016년 관리분부터 운전면허시험장의 관리권이 자치구에서 SH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따른 임대수입(자치구 위임관리비용 : 대부료의 50%, SH 위탁수수료 : 대부료의 10%)의 증가와 출납폐쇄기간 변경(익년 2월말→ 당해 12월말)에 따른 징수액 증가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추계한 것임.
- 공유재산임대료 중 자치구 위임재산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협의 등을 거친 직접관리를 통한 중장기적인 세입증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공유재산임대료 추계 : 147억 2천1백만원

산 출 내 역

○ 특별징수 : 운전면허시험장 대부 징수(대부료-위탁수수료)율
= 12,634백만원(4,389백만원 + 8,245백만원)

(단위 : 백만원)

징수월	면허시험장	대부료(A)	위탁수수료 (10%)(B)	징수액 (A)-(B)	비고
'15.12월 (16년 관리분 1차)	강서, 강남, 서부(일부) 도봉(일부)	3,892	389	3,503	'15년 예산
'16.1월 (16년 관리분 2차)	서부, 도봉	4,877	488	4,389	'16년 예산
'16.12월 (17년 관리분 전체)	서부, 강서, 도봉, 강남	9,161	916	8,245	

○ 일반징수 : 2,088백만원

※ 연도별 공유재산임대료 징수 실적

(단위 : 천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망
부과액	8,957,876	5,794,939	6,047,470	6,304,363	5,533,616
징수액	8,906,639	5,740,672	6,021,931	6,281,221	5,501,522
일반징수	1,871,773	1,821,139	2,095,936	2,077,474	1,998,183
특별징수	7,194,464 (면허시험장)	3,919,533 (면허시험장)	3,925,995 (면허시험장)	4,203,747 (면허시험장)	3,503,339 (면허시험장)
징수율(%)	99.42%	99.06%	99.57%	99.63%	99.42%

⇒ 특별징수(면허시험장 대부료) : 도로교통공단(강서, 서부, 강남, 도봉 면허시험장, 토지 132,256㎡, 건물 30,378㎡)

■ 공금예금이자수입

○ 공금예금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여유자금 운용 이자수입으로,

- 공금예금 이자수입의 경우는 최근 5년간 일반회계 평잔 중 최고(2012년 1,117,954백만원), 최저(2011년 801,053백만원)를 제외한 3개년 평균액을 2016년 평잔액으로 추정하고, 2015년 6월 기준 공금예금 금리 및 자금유동성을 고려하여 2015년도 예산대비 7.4% 감액된 182억 2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음.

※ '15년 6월기준 예금금리 : 공금예금 1.85%, 정기예금 1개월 1.84%, 3개월 1.90%,
6개월 1.97%, 1년 2.12%, 수시입출식예금 1.60%

○ 그러나, 추계 적용 금리 시점(2015년 6월) 이후 금리에 많은 변화가 없으나, 2015년도부터는 적용되는 금리산정 방식이 시중 금리에 보다 민감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는 측면에서 2016년도에 추가적인 금리등락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 대비한 적절한 세입조정 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음.

※ 기준금리 5%이상 등락시 다음 달부터 적용 ⇒ 기준금리(COFIX)를 다음 날부터 적용

▶ 공금예금이자수입 추계 : 182억 2천 7백만원

산 출 내 역					
○ 2016년도 이자수입 발생 추계 (단위 : 백만원)					
기 간	평균잔액 규모 ('16년 전망)		점유비(%)	이율(%)	이자수입액
계	956,304		100%		18,227
정기 예금	12개월	-	-	2.12	-
	6개월	286,891	30%	1.97	5,652
	3개월	382,522	40%	1.90	7,268
	1개월	-	-	1.84	-
수시입출식예금	-		-	1.6	-
공금예금	286,891		30%	1.85	5,307

■ 시유재산매각수입

- 시유재산매각수입의 경우는 일반매각분(최근 5년간 징수액 산술평균) 추계액과 특별매각분 추계액^(*주)을 감안하여 6,104억 7천 8백만원 (2015년도 예산 대비 11.2%, 616억 1천 1백만원 증액)으로 편성하였음.

※ 항목별 시유재산매각수입 추계내역

(가) 일반징수 : 44,745,287천원

(39,930,891+39,717,714+46,299,595+45,374,811+42,830,753)÷5×104.47%(공시지가 상승률)

(나) 특별징수 : 565,733,074천원

- 서울의료원 매각 분납대금 : 534,875,000천원(9,725억원의 55%)
- SH공사 강일지구 등 보상금 : 8,058,074천원
- 원지동 추모공원 부지 매각대금 : 22,800,000천원(4년 분납)

- 2015년도 시유재산매각수입에는 서울의료원 매각수입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정부의 복지 확대에 의한 급격한 재정지출 증가 등에 따른 재정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비상재정대책의 일환으로 향후 추진될 영동권역 종합발전계획(2015년 6월)과 연계하여 민간 활용을 위해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나,
 - 서울의료원은 매각재산 예정가격 9,725억원으로 지난 8월 25일과 9월 25일, 2차례에 걸친 공개매각은 연이어 실패함에 따라, 올해 시유재산매각 수입은 2015년도 당초예산 5,489억원 대비 13.7%에 지나지 않은 754억원만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바, 2014년 이후 해마다 세입에 차질을 빚어오고 있음.
 - 따라서 2016년도 세입확보 가능규모에 대한 검토와 함께 경기상황에 따라 적정 매수자가 없을 경우 막대한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비한 재무관리측면에서의 적정한 예방조치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3. 세출예산 검토

가.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 공통 소요 행정물품의 수급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지원하고, 반납물품 처분 및 재활용 등 물품관리를 위해 자재창고를 운영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66.8%인 5억 9천 2백만원을 증액하여 14억 7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예산액	2015예산액 (A)	201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544,540	885,025	1,476,630	591,605	66
사무관리비	17,300	98,430	103,660	5,230	5
공공운영비	840	840	840		
국외업무여비	20,000	20,000	40,000	20,000	1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400	20,400	20,400		
특정업무경비	66,000	66,000	76,200	10,200	15
연금지급금			600,000	60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420,000	679,355	635,530	△43,825	△6

- ‘국외업무여비’는 전년 대비 100% 증가한 4천만원을 편성하였음. 지난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메르스 기간 중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해외 연수” 등이 문제가 되었으며,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들의 공무 국외출장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외여행관련 지침’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불필요한 공무원의 국외출장을 방지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는 상황인 바, 국외업무 여비는 유사한 방문은 지양하고 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외출장인지 출장의 타당성이 확보된 후에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4)

-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년 대비 6.5% 감액안 6억 3천 6백만원)는 복합기 및 프린터 등 사무기기 구매에 2억 5천 5백만원, 업무용 정수물품 구매에 1억 5천만원, 노후집기교체 등에 2억 3천 1백만원 등을 편성하고 있음.

〈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부 산출내역 〉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자산및물품취득비	○ 복합기, 프린터기 등 사무기기 구매	=	255,000천원
	○ 업무용 정수물품 구매	=	150,000천원
	○ 노후 사무집기 교체 등	=	230,530천원

- 동 사업은 물품노후, 사무기기 감축, 부서이동 등으로 인한 수요물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물품 구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예산 절감을 도모해야 함에도 최근 3년간 물품취득 현황을 보면, 사무물품을 적재적소에 구매하지 않는 등 낭비적 요인이 곳곳에 발견되고 있음.

예를 들어, 문서세단기는 매년 구매량이 증가하고 있으나(4대(2013년)→7대(2014년)→11대(2015년 11월 24일기준)), 문서세단기는 조직개편 및

4) 인사혁신처,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관리·감독 강화한다: 공무국외여행 관련 복무관리 강화 지침 마련 이달 시행(인사혁신처 보도자료, 2015년 10월 22일)

부서이동에 맞춰 모든 부서가 비치할 필요가 없으며, 층별 1~2대를 비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과 함께 효율적인 물품사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현재 서울시의 물품구매는 효율적인 사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예산낭비적 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바, 물품구매에 있어 예산절감을 위한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집행부의 종합적 관리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3년간 문서세단기 취득 현황〉

(단위 : 원)

연도	연 번	물 품 구 매 내 역	집 행 액
2013	1	문서세단기 조달구매(체육진흥과)	768,120
	2	문서세단기1대 조달구매(뉴미디어담당관)	1,296,960
	3	문서세단기1대, 이동형파일서랍3개 조달구매(녹색에너지과)	1,274,220
	4	문서세단기1대 조달구매(토지관리과)	768,120
2014	1	문서세단기1점 조달구매(기획담당관)	829,450
	2	문서세단기1대 조달구매(문화정책과)	733,940
	3	문서세단기1점 카드구입비 지출(공공개발센터)	730,000
	4	세단기1점, 빔프로젝트1점, 영사용전동스크린1점 조달구매(주거재생과)	3,067,370
	5	문서세단기1점 조달구매(법무담당관)	829,450
	6	문서세단기2점, 이동형파일서랍3점 조달구매(도시계획과)	1,985,620
2015 (기준 11.24)	1	문서세단기1대 조달구매(갈등조정담당관)	945,070
	2	문서세단기1대 조달구매(공공재생과)	768,120
	3	문서세단기1대 조달구매(법률지원담당관)	768,120
	4	문서세단기1대 조달구매(재생정책과)	768,120
	5	세단기1대 조달구매(인생이모작지원과)	768,120
	6	문서세단기1대 조달구매(공기업담당관)	768,120
	7	문서세단기1대 조달구매(생활환경과)	768,120
	8	문서세단기1대 조달구매(자연생태과)	768,120
	9	문서세단기1대 조달구매(재무과)	768,120
	10	문서세단기1대 조달구매(통계데이터담당관)	768,120
	11	문서세단기1대 조달구매(도시관리과)	768,120

나.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 시유재산 매각·교환 추진을 위한 재산수입 증대, 주요재산의 취득·처분 심의 및 재산업무 담당 공무원 간 업무연찬회 등을 통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17억 1천 4백만원) 대비 33.6% 증액한 22억 9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예산액	2015예산액 (A)	201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1,072,011	1,713,711	2,290,275	576,564	33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49,992		2,290,275	2,290,275	
사무관리비	151,230	830,528	1,420,346	589,818	71
공공운영비	808,789	831,183	857,929	26,746	3
시책추진업무추 진비	12,000	12,000	12,000		
연구용역비	50,000	40,000	12,000	△28,000	△70

- ‘사무관리비’(전년대비 71.1% 증액한 14억 2천만원)는 감정평가수수료(9억 8천 3백만원), 공유재산심의회 운영(7백만원), 공유재산담당자 연찬회(1천만원), 재산관리수수료(4억 2천만원) 등으로 편성하고 있음.

〈 사무관리비 세부 산출내역 〉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 감정평가수수료	=	983,116천원
	○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	7,350천원
	○ 공유재산담당자 연찬회	=	9,880천원
	○ 재산관리 수수료(측량비 등)	=	420,000천원

- 최근 5년간 감정평가수수료 집행내역을 보면, 2015년에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6억 6천 3백만원) 등으로 해당 예산의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으며, 2016년에도 서울의료원 재 매각을 위하여 감정평가수수료(6억 6천 3백만원)를 재차 편성하게 된 것임.

〈 감정평가수수료 예산편성 내역 〉

○ 최근 5년 평균 편성액	: 170,000천원
○ 재산교환 감정평가수수료 편성	: 150,000천원
○ 서울의료원 매각 감정평가수수료 편성	: 663,116천원

- 이와 관련하여, 당초 2015년에 매각하기로 하였던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이 두 차례 공개입찰에도 불구하고 매각에 실패함에 따라,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가 매물비용으로 사라져 회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바, 감정 평가수수료 집행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책임있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5년간 감정평가수수료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10. 30.기준)
수수료	63,316	70,649	133,262	108,327	779,298

다. 계약심사 업무추진

- 발주부서에서 심사 요청한 사업비에 대한 적정한 원가산출을 위한 ‘원가조정거버넌스’ 및 계약심사담당 워크숍 개최 등의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4천 6백만원) 대비 64.6% 증액한 7천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⁵⁾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예산액	2015예산액 (A)	201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46,100	46,100	75,900	29,800	64
사무관리비	30,000	30,000	59,800	29,800	99
사채추진업무추진비	16,100	16,100	16,100		

- ‘사무관리비’는 원가조정거버넌스 운영 수당(4천 2백만원), 원가조정거버넌스 운영 경비(5백만원), 계약심사담당워크숍(1천3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99.3%(3천만원) 증액한 6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사무관리비 세부 산출내역 〉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 원가조정거버넌스 운영(참석수당) 150,000*7명*24회 = 25,200천원
	○ 원가조정거버넌스 운영(전문가 수당) 100,000*7명*24회 = 16,800천원
	○ 원가조정거버넌스 운영(운영경비) 200,000*24회 = 4,800천원
	○ 계약심사담당 워크숍 개최 13,000,000원*1회 = 13,000천원

5) ‘원가조정거버넌스’는 계약업체·협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계약원가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문회의로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 제1항에서 규정된 ‘원가분석자문회의’를 말하는 것임.

- 최근 3년간 원가조정거버넌스의 회의 결과를 보면, 연간 10회의 회의 개최와 참석위원도 평균 4.6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2016년 계획을 보면, 회의는 24회 개최에 참석자도 7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등 예년에 비해 과다한 회의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바, 내실있는 회의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집행부의 책임있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원가분석자문회의 운영 결과 〉

(단위 : 천원)

연도	회의개최	참석위원	지출(참석수당)
계	31회	142명	18,750
2015.10.	11회	55명	7,800
2014	11회	56명	6,550
2013	9회	31명	4,400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대상 계약에 대한 적절한 원가 분석에 의거한 사업비의 합리적 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공사의 원가 산정의 적정성 검토
2.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3.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회의의 위원은 의장 1명과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은 서울특별시 재무국장이 된다.

③ 의장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사항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제2항의 인원 중 의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④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 지방재원의 확충과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전전년도 보통세의 0.015%)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한 16억 3천 6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예산액	2015예산액 (A)	201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1,975,228	1,508,222	1,635,955	127,733	8
출연금	1,975,228	1,508,222	1,635,955	127,733	8

※ 2014년 : 법정출연금(1,501백만원) + 2013년도 미지급분 지급(474백만원)

- 서울시는 법령이 정한 일정금액을 해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음. 201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이후 2015년까지 5년 동안 전국 지자체가 연구원에 출연한 금액은 299억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서울시 본청이 출연한 금액은 61억원으로 총 출연금의 20.5%를 차지하고 있고,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시전체 출연금은 74억원으로 총 출연금의 24.9%에 달하고 있음.

〈 서울시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서울시전체 (A=B+C)	968	1,134	1,281	2,303	1,758	7,444
시본청(B)	795	953	955	1,975	1,447	6,125
자치구(C)	173	181	326	328	311	1,319
출연금합계(D)	3,939	4,597	6,587	7,711	7,136	29,923
출연금 중 시본청 비율 (B/D×100)	20.2	20.7	14.5	25.6	20.3	20.5
출연금 중 서울시전체 비율 (A/D×100)	24.6	24.7	19.5	29.9	24.6	24.9

※ 제264회 시의회 정례회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pp.191-192.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재원은 법령에 의거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재정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렇게 중앙정부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의거 행정자치부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와 감사를 맡고 있는 등 연구원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실정임.

〈한국지방세연구원 정관〉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정책과장이 되며, 그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연구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및 그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2.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의견 요구
3. 이사회 출석 및 발언
4.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5. 연구원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
6. 제5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 요구

- 또한, 제264회 정례회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규직 직원의 고액 연봉 수령, 지방이 아닌 행정자치부의 수족역할, 원장 자리의 전관예우 낙하산 인사 등의 문제, 고액의 인건비, 무리한 해외 벤치마킹, 파견인력 의 허술한 관리, 서울시 세정 및 재정 확충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연구 결과 등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먹구구식 업무 처리와 업무 실적에 대한 갖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바,
-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행정자치부 소속 연구원에 서울시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의 상당부분을 매년 시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할 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요망됨.

- 또한, 서울시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을 출연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 관련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고 출연금 예산을 편성한 것인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마. 상시 세금납부 체제 구축

- 시민들에게 납세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 세정업무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1억 3백만원) 대비 28.8% 증가한 1억 3천 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예산액	2015예산액 (A)	201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87,328	102,996	132,682	29,686	28
사무관리비	43,940				
공공운영비		43,940	66,290	22,350	5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43,388	59,056	66,392	7,336	12

- ‘공공운영비’ 6천 6백만원은 휴대폰문자수수료(4천만원), 지로신용카드납부 (1천 3백만원), 편의점수납수수료(1천만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50.9%(2천 2백만원) 증액 편성한 것임.
- 이는 IT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 기기의 대중화 등 시민 세금납부 패턴의 변화에 부응하며 시민편익증진과 세입증대기여를 위한 것으로, 매년 온라인 납부건수가 증가(2012년 1,483만건 → 2013년 1,611만건 → 2014년 1,675건 → 2015년(목표) 1,700만건)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공공운영비 세부 산출내역 〉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공공운영비	○ 편의점 수납 100원 * 100,000건 = 10,000천원
	○ 본인인증 52원 * 70,000건 = 3,640천원
	○ 지로신용카드납부 100원 * 130,000건 = 13,000천원
	○ 휴대폰문자수수료(LMS) 29원*850,000건 = 24,650천원
	○ 휴대폰문자수수료(SMS) 20원 * 750,000건 = 15,000천원

- 다만 문자발송수수료를 전년도 2천만원에 비해 대폭적으로 증액(전년대비 95.3%인 1천 9백만원 증액)하였는 바, 향후 온라인 납부건수와 문자서비스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본 사업에 대한 적정한 비용 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바. 모범납세자 지원

-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 및 지원하고 전자고지 활성화를 통해 종이고지서 발송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3억 3백만원) 대비 39.0% 증가한 4억 2천 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예산액	2015예산액 (A)	201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303,260	303,260	421,512	118,252	38
사무관리비	500	500	500		
기타보상금	302,760	302,760	421,012	118,252	39

- ‘기타보상금’은 전자고지를 통한 납세자에게 납부건당 500원 상당한 마일리지 지급을 위하여 4억 2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3억 3백만원에 비해 39.1%가 증가한 것임.

〈 기타보상금 세부 산출내역 〉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기타보상금	○ 마일리지 지급 421,012,000원 = 421,012천원

- 마일리지 제공은 인터넷 납부시스템 회원가입자를 확대시키고 이를 통해 납부율 제고와 함께 종이고지서 발송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6)

6) 인터넷 납부시스템 회원가입자 : 2012년 151만명, 2013년 163만명, 2014년 175만명

- 다만, 마일리지 제공에 의한 인터넷 납부시스템 이용자 증대효과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과도한 마일리지 지급 예산의 사용은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바, 차후에 적정한 마일리지 금액에 대한 조정을 통해 관련 예산이 무리하게 편성·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사. 시세 징수교부금

- 「지방세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에 근거하여 매월 각 자치구에서 징수하고 납입한 시세에 대해 그 처리비를 각 자치구에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2,954억 4천 8백만원) 대비 2.0% 증가한 3,013억 3천 4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예산액	2015예산액 (A)	201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266,927,700	295,447,744	301,341,600	5,893,856	1
징수교부금	266,927,700	295,447,744	301,341,600	5,893,856	1

- 시세 징수교부금은 매월 각 자치구에서 징수하고 납입한 시세징수액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산정 후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적용하여 그 산출액을 자치구 세입금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시에서 직접 징수하는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 등과 자치구 및 교육청으로 100% 전출되는 특별시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는 시세징수액에서 제외됨.
- 시세 징수교부금과 관련하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시세 징수교부금을 상당부분(27% 이상)을 가져감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특정 자치구에 편중되어 지급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시세징수교부금 현황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9월
시세징수교부금(A)	2,610억원	2,476억원	2,732억원	2,634억원
강남 3구 교부금(B)	722억원	685억원	761억원	738억원
강남구	367억원	329억원	358억원	361억원
서초구	199억원	195억원	220억원	209억원
송파구	156억원	161억원	183억원	168억원
비 율(B/A×100)	27.7%	27.7%	27.9%	28.0%

※ 제264회 시의회 정례회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p.317

- 따라서 서울시는 직접 징수하는 시세를 늘려가고 이를 위하여 서울시가 시세를 직접 징수하기 위한 시세징수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현행 시세징수 교부금 제도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